

# 公聽會 公述內容 要約

## 商標取消審判에서 申請權者의 범위

李상정(소비자보호원 주임연구원)

이번 商標法改正試案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商標權의 財產權으로서의 성질을 강조하는점에 있다. 商標權과 영업과의 분리이전의 허용, 전용사용권과 通常使用權의 구분은 일단 찬성한다. 이번 改正試案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몇가지 제안한다.

첫째, 商標양수인의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改正案이 영업과 분리해서 商標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과 함께 양도하든 않든 양수인이 계속하여 양도인이 판매하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商標양수인은 이전에 商標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신용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 품질보호기간내라면 당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것이 공평에 맞는다고 본다. 즉 商標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商標양수인은 상품양도인이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의 범위에서 당해물품에 대해 商標양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로.

둘째, 登錄商標의 取消審判의 請求權者범위의 확대문제이다.

지금까지 請求權者가 이해 관계에 한정되므로 당해商標가 取消事由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다 당해請求人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더 문제가 되어 본말이 전도된 감이 없지않았다.

不使用取消등의 경우는 商標權者나 사용권자의 登錄商標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商標登錄取消과 使用權登錄取消의 경우 日本商標法과 마찬가지로 取消請求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案) 日本法과 동일하게 「누구라도」請求할 수 있도록한다.

(2案) 이해관계인 이외에 「소비자보호를 정관상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권리능력있는 단체」를 추가한다.

세째, 商標權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法第26條는 法條文상의 표현이나 學說, 判例에 의하면 商標로서 사용되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잘못이다.

보통명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商標權의 효력이 제한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한다. (日本대판지재, 83·11·25, 58(우)제267호 고려인삼사건, 「「고려」라는 商標는 보통명칭이므로 商標權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判例는 商標權者에게도 당혹스럽지만 동일한 시장에 동일한 商標가 부착된 출처나 품질이 다른 상품이 통용되는 경우 소비자는 본래 의도한 상품, 商標만을 보고 구입하기는 곤란하다. 商標의 유사여부를 단순히 외관판에 의해서가 아니고, 관념·칭호에 의해서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번 改正案에 第26條의 표현중 商標를 표시 또는 표지로 바꾸고, 「商標로서의 사용인 경우」에는 당연히 登錄商標의 효력이 미침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商標權 侵害行爲

咸수영(금성사 특허부장)

商標法의 기본목적은 상표사용의 보호에 있고, 商標登錄의 궁극적 목적은 侵害행위로부터의 보호에 있다고 본다. 우리商標法에 규정된 侵害행위 및 관련 보호규정과의 관계에

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거래사회에서의 侵害행위 유형은 직접侵害, 간접侵害, 侵害의 예비행위, 유통 과정상에서의 侵害행위, 상품거래에 수반된 侵害행위로 구분된다.

직접侵害행위는 指定商品 또는 상품의 포장에 타인의 동일商標를 붙이는 행위, 그것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 그것을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들이다.

간접侵害행위는 유사관계에 있는 商標 또는 상품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배타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를 侵害하는 것을 간접侵害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商標의 교부·판매·위조 또는 소지한 행위는 侵害의 예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유통과정상의 侵害행위는 타인의 상품에서 登錄商品를 삭제·훼손하는 행위, 내용물을 변경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상품거래에 수반되는 侵害행위는 타인의 商標가 부착된 상품을 유포하면서 타인의 商標를 자기의 업을 위하여 광고·거래서류·명함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侵害행위는 法36條 규정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侵害행위에 대해서 現行法은 이를 방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즉, 法36條에는 侵害행위와 侵害로 보는 행위가 구별없이 혼재되어 있고, 직접侵害행위 또는 간접侵害행위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면서 예비행위는 규정되어 있는 모순점이 있다. 그리고 侵害로 보는 행위의 유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法第60條에는 가벌적 행위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現行規定에는 예비행위가 가벌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직접侵害행위의 대부분이 비가벌적행위로 되어있다.

따라서 商標權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상표사용개념과 가벌적侵害행위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改正試案에는 商標사용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2條4項).

1號: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

2號: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商標가 표시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

3號: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표찰 또는 명함에 商標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확포하는 행위.

그리고 侵害로 보는 행위만 규정하든지 侵害행위와 侵害로보는 행위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규정중 하나의 案을 채택바람. 이에 따른 가벌적 규정은 전자를 채택할 경우는 商標權 또는 전용사용권을 侵害한 者 및 第36條에서 侵害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者도 포함되도록 60條를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또 후자의 경우는 第36條에 규정된 商標權侵害 행위를 한 者를 포함시키도록 60條를 改正해야 할 것이다.

## 商標權登錄出願 補正 取消審判상 이해 관계

金容仁 변리사

이번 商標法 改正의 商標登錄出願補正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내용은 도달주의에서 발송주의로 변경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발송주의는 사정의 통지행위가 일어나는 시기와 지역등의 문제 때문에 불평등의 요소가 있고, 변경이나 분할, 보정을 위한 불필요한 審判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정문제와 관련한 시기문제는 현행법대로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改正理由에서 밝힌대로 신속한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나 出願人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取消審判에 있어서 利害關係問題는 現行法이 第43條 第2項에서 묵인과 불사용의 경우 利害關係人만이 審判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묵인, 불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실제적으로 수요자등이므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商標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第三者도 取消審判제기가 가능하도록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또 現行法 第20條 第2項 第2號의 사용실적 증명의 의무가 면제되면 이와같은 취지로 되며, 改正案의 商標權의 영업과 분리이전 및 그 일부이전과 관련하여 그 취지에도 더욱 합당하게 될 것이다.

侵害문제에 있어서 第36條의 조문 제목을 변경하든지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 商標權 移轉制度 등

### 李相陳 변리사

商標制度는 소비자와 商標權者를 보호하며 法을 이들 양자를 얼마나 조화있게 보호하여 종국적으로는 산업발달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 <商標權 移轉>

現行制度의 商標權을 이전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간의 양도시는 영업이전을 공증서류의 형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 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商標를 국내인이 이전 받을 경우만 영업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 또 국내인의 외국상품수요가 제한되고 있고, 필요시 사용권으로 해결함으로써 외국상표전자의 횡포가 예상되며, 불안정한 사용권에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出願중인 商標의 이전시 新聞公告문제는 商標法은 원칙적으로 登錄商標만을 규제보호대상으로 하는데 登錄前의 出願商標까지를 부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出願商標의 이전시 新聞공고를 의무화한다면 미등록주지·著名商標의 이전과 불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登錄여부가 불확정적이고 登錄과정에서 商標公報에 공시되고 있다.

그리고 商標權 一部移轉의 규정이 없는데 따른 문제점은 商標權은 동일 상품구분내에서

서로 다른 비유사상품을 포함하여 登錄받을 수 있어 하나의 商標權內에 사실상 다수의 商標權이 존재하는 형식으로 존속한다. 또 現制度下에서는 양도가 불가능하여 사용권의 허여만이 가능하다. 즉 사용권에서는 일부 사용허여가 가능하고 이전은 불가능한 現행제도는 상호 모순되고 있다.

이러한 商標權의 이전에 따른 문제점은 제품의 품질향상, 품질의 균질화 실현, 민간주도 경제화, 수입개방, 기업의 국제화등 사회여건이 변화됨에 못미치고 있고, 더우기 商標制度도 사용권제도의 개선, 商標선택기회 축소, 商標制度가 국제화되고 있어 산업환경에 부응하여 산업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공술인은 改正試案 第27條와 第11條의 3의 第1案을 각각 반대하고, 第27條 2案과 11條의 3·2案을 찬성하고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안한다.

第27條 1案과 第11條의 3·1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먼저 일부이전을 금지하는 것은 산업환경과 商標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또 일부무효가 선언되고 있는 이상 일부이전 금지를 유지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사장商標의 조장, 분쟁조장의 우려가 있다.

第27條 2案을 찬성하면서 다음의 대안을 제안한다.

신문공고제도는 출처변경을 公示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制度인데 登錄商標이전시 그 사유를 공고한다 하더라도 거래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2案의 신문공고 절차도 폐지하는 대신 이전 전후 商標公報에 게재함으로써 실제 관심있는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선되면 민원인의 경비절감, 特許廳의 수입증대, 商標처분이 용이하여 사장 商標를 방지할 수 있다.

法11條의 3·2案을 찬성하고, 다음과 같이 字句修正을 제안한다.

① 商標登錄出願의 승계는 出願人 명의변경

신고에 의한다.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商標登錄出願의 승계시 指定商品마다 분리하여 이전하고자 할 때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出願人 명의 변경신고 때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속하는 聯合商標나 聯合商標登錄出願의 指定商品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聯合商標制度〉

현행 聯合商標制度는 유사상품간에는 연합하여야만 출처의 오인, 혼동이 방지될 것이므로 연합하여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 연합할 필요가 없는 상품 간에도 聯合商標로서 登錄받아야 하며, 표장이 동일하고 指定商品이 유사한 경우 聯合商標가 불가능하고 추가제도에 일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聯合商標制度의 취지인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권리자의 권리보호, 商標유통의 촉진등으로 사장商標를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일표장이라도 상품이 유사한 경우 연합이 가능하게 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간에만 연합이 가능케 함으로써 현행 모순을 없애고, 연합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指定商品 追加 登錄〉

현행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는 추가등록에 의한 권리의 존속기간이 불명확하여 존속기간에 대하여 두가지 견해가 있다.

다수견해는 原登錄의 존속기간에 종속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법적인 명문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一部에서는 出願절차나 審査의 요금이 原出願과 동일하고 별도의 無効審判이 되며 商標의 指定商品 불가분성을 들어 독립된 존속기간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이들 두견해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현제도는 분할·변경·보정절차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도 절차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一般出願에 따른다는 견해가 양립되어 있다. 이에 따른 문제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불복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1案으로 聯合商標制度를 대안과 같이 개선하면 聯合制度에 의하여 권리 확대가 가능하므로 현행 미비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존치케되는데 존속기간규정을 登錄日로부터 10년으로하고 보정·변경·분할의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며, 原出願이나 原出願이 포기·무효·거절되더라도 변경절차에 의한 처리가 가능케 할 것이다.

#### 〈16條, 6號〉

이 조항은 심사관의 견해차를 유발하고 권리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국제분류 도입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임.

#### 〈不使用 取消審判〉

改正試案은 일부취소, 일부무효제도를 도입함에 대하여는 타인사용, 부기변경사용 등 위반의 경우는 소비자보호를 고려하여 일부취소를 허용하지 않게 하고있다.

이는 법리상의 형평에 맞지않고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取消事由 전반규정에 일부취소규정을 명문화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5條1項3號 규정중 “영업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라는 규정은 商標사용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2條4號를 무시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엄격히 함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영업적으로”라는 用語는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또 改正試案中 聯合商標의 指定商品 중 동일한 상품에만 사용한 경우에만 基本商品의 사용으로 의제되게 한 점은 基本商標는 불사용하고, 그 基本商標에 聯合商標의 指定商品中 유사한 상품을 聯合商標로 사용하였으나 基本商標의 상품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基本商標는 취소된다. 그리고 取消의 실익이 없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改正案 45條1項3號 중 “동일한 상품” 대신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바꿀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改正案 중 제척기간 규정인 44條 2項과 청구이후 사유소멸 규정인 45條 4項이

서로 괴리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의한다.

45條1項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44條2項은1案이 타당하며, 4項은 삭제할 것이 아니라取消事由의 성립요건규정이므로 존치되어야 한다.

商標權者, 專用使用權者 또는 통상使用權者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國內에서 계속하여 3年 以上, 登錄商標는 그 指定商品에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登錄商標를 使用하고 있는 경우 또는 聯合商標인 경우에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 商標登錄의 取消 및 商標權 移轉

#### 全우경(삼양식품 이사)

이번 改正案은 지금까지 현실에 맞지 않는 商標權 이전조항에 대한 改正과 불사용 기간의 연장을 현실에 부합하게 하고, 국제주의로 지향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외국제도를 많이 도입했다는 점 외에도 用語사용의 분쟁소지, 문제해결을 위한 부분이 좀 검토되었으면 한다.

9條5項은 그대로 유지하고 取消審判請求 후 登錄抹消時 取消審判制度가 실효를 못거두는데 있으므로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복잡하게 하는것보다 登錄抹消에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改正試案대로 두면 피청구인측에서 보면 자기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권리를 포기한 입장에서 3년간씩 類似商標마저 登錄을 제한당함은 너무 가혹하다. 審判이 일단 제기되면 同一 뿐만아니라 類似商標까지도 승패에 관계없이 판결확정시까지 審査가 보류되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第20條(商標權의 존속기간)에서 試案 2案을 채택바란다.

更新登錄은 新規出願보다 비용이 더 비싸고, 不사용商標의 更新登錄時 取消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取消審判제기시 함부로 抹消

登錄後 新規登錄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第22條(사정 및 거절 이유의 통지) 第3項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마땅히 허여되어야하는 商標도 審判계류중인 類似商標들이 審判중이라는 이유로 1~6년간 심사보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승패에 관계없이 무분별한 審判제기로 타인의 類似商標登錄을 지연시키는 폐단은 방지되어야 한다. 4項은 3項의 단서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第27條(商標權의 이전) 第3項에서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登錄원인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登錄질차가 만료된 날로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第43條(審判의 請求)에서 정정허가심판도 존치해야 한다. 登錄權者의 입장에서 보면 出願人이나 審査官의 착오로 인하여 聯合性이 없는 것이 聯合商標로 登錄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정정허가 심판도 존치되어야 한다.

第45條(商標登錄의 取消事由)에서 試案中 1案보다는 2案을 찬성한다.

이는 取消審判制度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指定商品이 2이상의 경우 不사용에 따른 指定商品마다 최소할 수 있는 法精神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取消審判이 일단 請求되면 동일유사한 商標를 동일유사한 상품에의 登錄이 저지되므로 이를 포기하고 말소한다 하더라도 3년동안 登錄이 막혀 不사용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혹하다. 또 審判請求된 登錄商標나 請求되지 않은 聯合商標의 指定商品 중 동일한 상품은 不사용하였으나 유사상품은 사용했더라도 취소를 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측에서 사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여 “정당한”이라는 用語를 넣어야 할 것이다.

第51條(査定不服抗告審判)에서 査定不服抗告 審判은 請求人의 주장만에 의하여 審判이 진행되므로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이의결정

에 의하여 거절사정된 商標가 불복항고심판청구시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길 바란다.

## 商標使用權制度和 상표갱신등록제도

### 金徹洙 변리사

#### 〈商標使用權 制度〉

이번 改正案에는 종전에 통상사용권만 인정되던 것이 第29條에 專用使用權制度가 신설되어 商標權者는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독점시킬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물권적 성질과 채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로 改正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改正試案은 商標權의 성질을 명확히 하고 품질의 향상과 기업의 기술수준향상을 전제조건으로 국제화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전용사용권제도는 전용실시권제도와 달리 일반 수요자의 이익과 상거래질서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출처표시라는 면에서는 商標制度의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품질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품질의 誤認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제도자체만으로는 문제가 內在되어 있다. 즉, 좋은 商標를 登錄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商標브로커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현재의 사용권제도도 계약에 따라 그 성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형화되어 성질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어 모순되고 불완전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商標의 전용사용권제도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의 수준향상으로 품질의 균일성을 기할만 하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국제화에 부응하고 권리의 명확화를 위하여는 도입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評價한다.

그러나 전용사용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용사용권에 침해금지청구권, 간접침해방지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이 制度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다.

첫째, 商標權者,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의 3자가 同一商標를 상호 일부 중복되는 상품에 사용할 때, 어느 일방이 품질이 粗惡한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할 때 또는 기타 상업상 신용을 지키지 않을 때 수용자들로서는 품질오인 및 출처혼동으로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이들 사용자들도 어느 일방으로 인해 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商標사용이 건전히 되도록 법적, 제도적 뒷바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專用使用權者 등이 만일 고의적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指定商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商標權者로서는 별수 없이 商標權이 불사용취소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사용권등록취소사유에 이러한 조항도 삽입해야할 것이다.

둘째, 전용사용권이든 통상사용권이든 商標에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하는 것이 출처혼동과 수요자 기만상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 〈商標登錄更新制度〉

商標권존속기간의 更新登錄出願時에 現行法 第21條1項3號에 의하면 반드시 商標사용증명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제부터 商標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진 商標權者의 이익을 꺾어버리는 일이 간혹 있고, 商標權者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카탈로그나 라벨을 인쇄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商標審査官은 이를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이런 형식적이고 선의의 商標權者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不使用商標의 更新登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영업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제 不使用商標에 대한 입증 책임이 商標權者에게 돌아간 만큼 실익이 없는 商標는 사용하지 않고 登錄하지도 않을 것이며, 商標도 이제 재산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意匠法 總則

### 金성택 변리사

이번 意匠法改正試案에 △단순히 特許法改正案에 맞추는 외의 意匠法의 改正목적 및 改正이유가 새롭게 제시된 것이 없다는 점 △法文상의 불합리한 문장과 낱말에 대하여 철저히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엿보이지 않는 점 △特許法을 인용하는 부분이 많아 독립 법으로서의 意匠法의 지위와 체제가 아직도 정립되지 못한 채로 있다는 점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 둔다.

總則規定 중 第2條는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를 논하고 있다. 改正案대로라면 第1項과 第2項의 본문은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로 표현되어야 한다.

第1項의 단서는 特許廳 재직 공무원을 意匠登錄出願人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므로 총칙 말미에 둬야 타당하다.

第3條의 第1條의 규정은 국가 및 국제사회의 질서유지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第4條의 『意匠의 정의』로 하고 第5條에서 『登錄意匠』 및 『실시』등에 관한 用語의 정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第5條 第1項은 『工業上 이용할 수 있는 意匠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意匠에 대하여는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로 긍정문으로 수정하고, 『국내공지』의 지역적 범위를 넓힌 점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본다.

第8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第1項의 意匠登錄出願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意匠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意匠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
- 2, 圖面의 간단한 설명
- 3, 意匠의 설명
- 4, 意匠登錄 청구의 범위』

이렇게 改正되면 第34條의 규정도 改正해야 한다.

『登錄意匠의 범위는 意匠登錄出願書에 첨부된 의장의 설명서의 기재사항과 圖面에 표현된 意匠에 의하여 정한다』로.

第13條 第13條의3에 규정된 出願의 분할, 보정 및 변경과 관련된 기간을 『査定의 통지가 발송되기 전까지』로 한정된 것은 特許廳의 일방적 행정편의 만을 고려한 느낌이며, 出願人の 권익은 감안되지 못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중점과 검마의 사용이 통일되지 않고, 『意匠』과 『意匠考案』이 별의미 없이 통일성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意匠登錄 要件

### 金延洙 변리사

이번 意匠法改正案은 第5條2項의 意匠創作性에 관한 판단범위에서 新規性에 관련된 것을 삭제하였다는 점과 기타 각조문이 불합리하거나 부정확한 用語를 정리하였다는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改正案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改正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국가 별로도 규정이 각기 다르고, 이 개념을 도입하는데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意匠은 特許·實用新案과 달리 물건에 표현된 디자인 그 자체이므로 『類似意匠』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意匠制度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第24條 중에 『설비』를 『준비』로 改正되었는데, 개념상으로는 준비가 훨씬 포괄적으로 쓰여지고 있어 쉽게 침해되어 더 취약한 법률 개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第36條의2중 2, 3호에서 『물건』을 『의장』 또는 『고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